

충청북도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7. 2.
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 원 장

개정사유

국내여비규정의 개정 (1996. 12. 31, 대통령령 제15,247호)으로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,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일비 (6,500원 → 10,000원) 및 숙박료 (37,500원 → 41,000원)를 상향 조정함.

근거법령

국내여비규정 「별표 1」

충청북도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 (여비의종류)중 "현지교통비" 를 "일비" 로 "숙박비" 를 "숙박료" 로 한다

제7조 (회의수당지급기준)중 "현지교통비" 를 "일비" 로 "숙박비" 를 "숙박료" 로 한다

제9조 (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출장시의여비)중 "현지교통비" 를 "일비" 로 한다

【 별표 1 】 의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 : 원)

구 분	일 비 (1 일 당)	숙 박 료 (1 야 당)
의장·부의장	10,000	41,000
의 원	10,000	41,000

비고 1중 "현지교통비" 를 "일비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